



Web Contents



2024년 05월 10일 03시 28분

"목포시 '다이옥신 배출' 쓰레기 소각 추진 논란"에 대한 해명 보도

2020.11.13 조희수 1014 등록자 김장원

서울경제 2020.11.8일자 “목포시 ‘다이옥신 배출’ 쓰레기 소각 추진 논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전남 목포시가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소각방식을 정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의 우대점수를 부여해 공모진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목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2018. 5.)을 통해 여러 가지 소각방식과 장단점이 조사되었고, 이중 스토커방식, 유동성방식, 열분해방식을 비교하여 시공실적이 많고(조사당시 80%이상이 스토커 방식), 범용화된 방식이며, 운전과 보수가 용이한 스토커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KDI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 소각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2초이상 유지하고, 급속 가스냉각방식을 적용하여 재생성도 방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로 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굴뚝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소각시설 운영현장에서 검증된 대기오염방지시설(무촉매탈질설비,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 선택적촉매반응탑)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로써 10%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하였는데 이 보다 1%를 낮춰 공고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도 소각시설 우대점수를 0.5~2%까지 부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목록

이전글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

다음글

일부 언론 목포, 목화체험장조성공사,관련 해명자...

MokPo - Si
Web Contents

